#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79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김예지·김형동·박덕흠

김선교 • 강기윤 • 최혜영

이주화 • 태영호 • 이명수

구자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 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5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수집·제작·제작지원"을 "수집·보존관리·제작·제작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및 보상"으로 한다.

- 3의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6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	<u>&lt;</u> 삭 제>
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	
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	
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	④제1항 및
<u>터 제3항까지의 규정</u> 에 따라	<u>제2항</u>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	
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	
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 등) ① (생 략)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2. (생략)

<신 설>

4. ~ 6. (생 략) <u><신 설></u>

7. ~ 10. (생 략) <u><신 설></u>

-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 3. ------<u>수집·보존관리·제작·제작</u> 지원-----
  - 3의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 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 장 및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4. ~ 6. (현행과 같음)
  - 6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7. ~ 10. (현행과 같음)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여

<신 설>

③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 의 조직 및 <u>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